

의안 번호	제3664호
----------	--------

김포시 도시숲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9월 3일 김포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25년 9월 11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5년 9월 19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5년 9월 19일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설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도시숲 등의 조성·심의 위원회 심의대상에 ‘가로수 조성관리 계획 수립’ 포함(안 제3조제1항제2호)
- 나. 가로수 조성·관리 비용 부담자가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(안 제6조제6항)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9. 주문사항 : 없음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